

중국 法醫學書 《洗冤集錄》과 公案小說의 창작*

朴 明 眞**

<目次>

- | | |
|---------------------------------|-------------------------------|
| I. 序論 | IV. 《洗冤集錄》의 법의학적 요소와 公案小說의 창작 |
| II. 《洗冤集錄》의 저작 배경과 公案小說의 창작 | V. 結論 |
| III. 《洗冤集錄》에 나타난 司法制度和 公案小說의 창작 | |

I. 序論

중국의 고대 法律文學 가운데 법문화적 요소가 가장 두드러진 것은 公案小說이라 할 수 있다. 公案소설은 중국 고대소설사에서 하나의 독립된 類型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내용과 형식면에서 법률문학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公案소설의 내용은 사건의 발생과 전개 및 사건의 해결을 주된 골격으로 삼고 있으며, 그 형식면에서도 다양한 법률문화적 요소를 드러낸다. 이것은 公案소설의 형성 및 발전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公案小說의 형성과 발전과정에는 문학 내적 요인과 문학 외적 요인이 모두 작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 문학 외적 요인의 하나로 法律類書의 성행을 꼽을 수 있다. 법률유서 가운데 公案소설의 창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疑獄集》·《折獄龜鑑》·《棠陰比事》 등의 법률판례서라고 할 수 있다.

* 이 연구는 2008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부 조교수

이것은 수많은 사건의 실제 사례를 다루고 있어 제재 및 문체 면에서 공안소설의 창작과 밀접한 영향관계를 형성하였다. 이 외에 법률관계서의 영향을 받아 편찬되었으며 또한 공안소설의 내용과 창작기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고대의 法醫學書를 들 수 있다. 중국 고대의 법의학서는 법의학 방면의 학술적 성과를 지니는 중요한 저작일 뿐만 아니라 지방관의 사법 행정에 있어서 지침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기도 하다.

법의학서는 사체 검시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 및 세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는 저작으로 중국 공안소설의 창작에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고대 법의학서의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宋代의 《洗冤集錄》·《平冤錄》·《結案程式》 과 元代의 《無冤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세원집록》은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이른 법의학 저작으로 시신의 檢驗에 관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송대의 법률제도를 면밀하게 반영하고 있어서 당시 범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저작으로 꼽힌다. 이러한 법의학서의 내용은 공안소설의 창작에 있어 전문성을 지닌 소재의 발굴과 공안소설 특유의 창작기법의 표현을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공안소설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중국에서는 연속극 ‘《大宋提刑官》 시리즈’가 CCTV를 통해 방영되어 높은 시청률을 거두었다. 이 드라마는 중국 법의학 드라마의 고전판이라 할 수 있는 작품으로 세계 최초의 법의학서인 南宋의 《세원집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따라서 이 드라마를 통해 남송시대의 법률제도와 법의학 지식 및 법의학 경험을 토대로 사건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의 흥미로움과 긴장감을 만끽할 수 있다. 최근 각종 과학수사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大宋提刑官》은 시대극과 과학수사의 묘미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드라마로 주목할 만하다. 이와 함께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과학수사대의 활약상을 다룬 ‘《별순검》 시리즈’가 조선시대 사람들의 애환과 함께 각종 사건을 치밀한 과학수사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흥미로운 과정을 담고 있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CSI(과학수사대)형 드라마’들의 인기는 법의학 정보와 수사가 결합된 스

토리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고대 공안소설에서도 이러한 법의학적 요소를 포함해 다양한 범문화적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공안소설의 형성과 발전에 있어 고대 법의학 저작의 영향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세원집록》은 지방관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의옥집》·《절옥귀감》·《당음비사》 등 법률판례서의 영향 아래 편찬된 것으로 법의학 적 검험뿐만 아니라 사법소송제도까지 함께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세원집록》의 저작배경 및 공안소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공안소설에 반영된 사법제도에 대한 법의학서의 영향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공안소설에 반영된 검험절차와 법의학적 요소에 대한 법의학서의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洗冤集錄》의 저작 배경과 公案小說의 창작

《洗冤集錄》은 宋慈(1186~1249)에 의해 南宋 理宗 淳祐 7년(1247) 湖南 憲治縣에서 간행되었다. 《세원집록》은 현대의 법의학자들에 의해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법의학 저작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이탈리아 프로투나투스 피델리스(Fortunatus Fidelis: 1551~1630)의 법의학 저작 《의사의 보고(De relatione luc Medicorum)》(1602)보다 무려 350년이나 앞서는 것이다.¹⁾

《세원집록》의 저작배경을 살펴보면, 송자는 字가 惠父이며 建安(지금의 福建 建陽縣) 童游鄉 사람이다. 송자는 남송 淳熙 13년(1186)에 태어났으며 어려서 朱熹의 제자인 吳稚에게서 수학하였고 朱學의 ‘格物致知’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開禧 원년(1205) 臨安(지금의 浙江 杭州)에 가서 太學에서 공부하였으며, 태학박사 眞德秀에게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1) 洪丕謨 著, 《中國古代法律名著提要》(浙江人民出版社, 1999), 297쪽; 강대영·강현욱·곽정식 외 9인 공저, 《법의학》(정문각, 2007), 16-17쪽.

嘉定 10년(1217) 乙科 進士시험에 3등으로 급제하였고, 寶慶 2년(1226) 贛州(지금의 江西) 信豐縣에 主簿로 부임하였다. 송자는 비록 임기가 다하였으나 감주 지역의 기근 때문에 賑恤을 위해 파견되었고 진휼과정에서 공을 세워 조정의 상도 받게 되었다. 개희·가정 연간에 감주와 복건 일대에는 병란이 자주 일어나 朝廷은 招捕使 陳鞞를 파견하였는데, 송자는 진덕수의 추천을 받아 반란의 진압에 참여하게 되었다. 오래지 않아 병란은 진압되고 송자는 조정에서 상을 받았으며, 일이 끝난 후 초포사의 추천으로 汀洲(지금의 福建 長汀縣)에 知縣으로 부임하였다. 당시 정주는 소금이 비싸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송자는 소금을 운송하는 노선을 수정하여 소금 값을 떨어뜨리고 백성들도 소금을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 端平 2년(1235)에 그는 樞密院士 曾從龍의 부름을 받고 樞密使가 되었다. 嘉熙 원년(1237)에는 邵武(지금의 福建 邵武市) 軍通判으로 승진하여 太守의 직무를 이행하게 되었다. 그는 성품이 근면하고 청렴하며 정치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드러내었다. 浙西에 기근이 들자 송자는 宰相 李宗勉의 천거로 이 문제의 처리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그는 철저한 현지조사를 마치고 기근에 빠진 백성을 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규휼을 차등적으로 실시하여 절서에는 배고픈 사람이 없게 하였다.

이후 가희 3년(1239) 송자는 廣東 提點刑獄(약칭 提刑)으로 승진하였는데, 이것은 지금의 사법관의 자리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이곳의 많은 관리들은 불법을 자행하고 수많은 안건들은 처리하지 못한 채로 쌓아놓았으나, 송자는 즉시 규약을 하달하고 쌓여있는 안건들을 말끔히 해결하여 8개월 만에 무려 200여 건의 안건을 해결하였다. 이후 가희 4년(1240) 그는 감주 제점형옥을 맡았고, 淳祐 원년(1241)에는 常州에서 軍事의 직무를 맡았다. 이후 그는 湖南으로 옮겨 提刑을 맡았다. 그는 형옥에 있어 특히 檢驗을 중시하였고, 검험에 있어서는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하였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경력을 토대로, 《疑獄集》 등 여러 법률유서들을 참고하여 순우 7년(1247) 마침내 법의학 대작 《세원집록》을 완성하였고, 호남 헌치현에서 조판하여 간행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탄생한 《세원집록》은 후세에

법의학을 위한 불후의 명작으로 남게 되었다. 이후 그는 정치에서 탁월한 공적을 세워 直寶謨閣에도 제수되었고, 이후 廣州의 知州를 지냈으며 관직이 廣東 經略按撫使에까지 이르렀다. 송자는 순우 9년(1249) 병에 걸려 향년 63세의 나이로 광주에서 생을 마감한 후 고향 건양현 동유향 昌茂村에 묻혔다. 송자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황제는 그에게 朝儀大夫의 직함을 내리고 御書로 墓門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그의 지방관으로서의 뛰어난 행적과 업적을 짐작할 수 있다.²⁾

《세원집록》은 세상에 나온 후 아주 빨리 전파되었으며, 송나라 이후 元·明·清 역대로 검험관리가 판안을 처리할 때 참고하는 필독서가 되었다. 심지어는 등용시험의 내용이 되었으며 사고전서에도 수록되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은 원각본 《宋提刑洗冤集錄》으로, 총 5권 53조이다. 이 판본은 北京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세원집록》이 출판된 지 600여 년 후 重刊 再版된 것이 무려 39종이나 된다. 그중에서 王興의 《無冤錄》·孫星衍의 《宋提刑洗冤集錄》·許槿의 《洗冤錄詳義》등이 영향력이 크다. 1059년 중국에서 법률유서의 중요 저작인 《의옥집》 간행되었고, 송대에 《세원집록》과 《結案程式》과 같은 법의학 저작이 간행되었으며, 이후 趙逸齋에 의해 《平冤錄》이 편찬되었다. 또 원나라 때 1308년 혹은 1335년에 또 하나의 유명한 법의학 저작인 王興의 《無冤錄》이 간행되었다. 이후 《무원록》은 조선과 일본 등지에 전해졌다. 《세원집록》은 유럽과 미국 등 외국에도 전해져 9개국 12종이나 되는 번역본이 있다. 한국에 3종, 일본에 8종, 베트남에 1종, 네덜란드에 1종, 독일에 2종, 프랑스에 3종, 영국에 1종, 미국에 1종, 러시아(소개본)에 1종이 있다.³⁾

2) 宋慈에 관한 기록은 《民國福建通志·宋慈傳》·《福建省志人物傳記·宋慈》·《永樂大典》·《後村大全集》 등에 보인다.

3) 1873년 영국의 자일즈(H. A. Giles)는 寧波에 있었을 때 관부에서 검시를 할 때도 참고하던 《세원집록》을 보고 번역하였고, 1862년 네덜란드인 그리스(Grys)는 네덜란드 번역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브라이텐슈타인(H. Breitenstein)은 이것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중국법의학》이란 제목을 붙였으며, 1882년

《세원집록》은 당시 법의학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담고 있으며, 《의옥집》·《折獄龜鑑》·《棠陰比事》 등 법률판례서의 영향을 받아 편찬된 것으로 중국 고대의 법률제도와 법률사상 등 법문화의 내용을 담고 있어 학술적으로 아주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또한 《세원집록》은 송자의 법의학 방면의 실천적 경험과 연구 성과 및 개인의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세원집록》은 세계에서 가장 이른 계통적인 법의학 저작의 대표작이며, 南宋에서 清末에 이르기까지 다른 檢驗書들의 내용에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이 책이 법률문학의 창작에도 크게 기여한 점 역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세원집록》의 저작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이 책과 공안소설과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원집록》의 제목에 등장하는 ‘洗冤’은 ‘억울함을 벗다’라는 의미이다. ‘洗’는 ‘洗雪’, 즉 깨끗이 씻는다는 의미이고, ‘冤’은 ‘冤枉’, 즉 억울함을 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송대의 사법제도에는 ‘理雪制度’가 있었는데, 바로 피고가 판결에 승복할 수 없을 때 재소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제도이다. 《洗冤集錄·序》를 살펴보면 “제목을 《세원집록》라 하였는데.....억울함을 씻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과 같은 능력일 것이다.(名曰《洗冤集錄》.....則其洗冤澤物, 當與起死回生同一功用矣.)”⁴⁾라는 구절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판에서 억울한 사건을 만들지 않는 것이 백성들을 이롭게 할 수 있음을 밝히려는 《세원집록》의 궁극적인 저작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세원집록·서》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저작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중국 고대의 판결에 있어서 검험의

프랑스 법의학자 에르네 마르탕(Ernest Martin)은 《세원집록 소개》를 《Rev. Ext. Orient》에 발표하였다. 이것이 발표된 후 호프만(Hofmann)이 이것을 독일어로 번역하였다. 1910년 프랑스인 리톨프(Litolff)가 베트남의 판본 《세원집록》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잘못을 고친 책》이란 제목을 붙이려고 하였다. (南宋)宋慈 著, 《洗冤集錄今釋》(軍事醫學科學出版社, 2008), 5쪽.

4) (南宋)宋慈 著, 《洗冤集錄譯注》(上海古籍出版社, 2008), 1쪽.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세원집록·서》에서 “사건의 소송에 있어서 사형판결보다 중대한 일은 없는데, 사형판결에 있어서는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검험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獄事莫重於大辟, 大辟莫重於初情, 初情莫重於檢驗).”⁵⁾라고 하여 검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담당관리가 검시를 얼마나 신중하게 처리해야하는지를 강조하였다. 그는 《세원집록·서》에서 당시 검시가 홀시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요즘 여러 州와 縣에서 검험 업무를 신임의 관리에게 맡기거나 무관에게 넘기고 있다. 이러한 관리들은 경력이 오래되지 않고 갑작스레 시험해 보는 것이고 또 검시관의 속임수나 하급관리의 간교함이 더해져 사건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막막하여 해결할 수가 없다. 혹 영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과 두 눈에 의존하다보니 지혜를 펼치기가 어렵고, 또 어떤 관리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직접 가까이 가보지 않고 손으로 코나 잡으며 검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다.(年來州縣, 悉以委之初官, 付之右選. 更歷未深, 驟然嘗試, 重以作作之欺僞, 吏胥之姦巧, 虛幻變化, 茫不可詰. 縱有敏者, 一心兩目, 亦無所用其智, 而況遙望而弗親, 掩鼻而不屑者哉!)⁶⁾”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법령에서는 법령을 전달하고 사법관을 선발하는 규정에 있어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法中所以通差令佐理掾者, 謹之至也.)⁷⁾”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송자가 억울한 판결이 발생하는 원인이 검험의 신중하지 못함 혹은 경험의 부족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며, 이 때문에 검험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공안소설에서도 범인을 확정하는 데 과학적인 방법이 아닌 拷訊을 가해 자백을 받아내는 장면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살인사건인 경우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억울한 판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철저한 수사와 과학적인 조사의 진행이 필요하다. 공안소설에

5) 같은 책, 1쪽.

6) 같은 책, 1쪽.

7) 같은 책, 1쪽.

서는 종종 과학적인 심문과정과 엄격한 검시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범인을 색출하는 장면들을 통해 이러한 저작의도를 종종 드러낸다. 이러한 작품들은 어느 정도 법의학서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二刻拍案驚奇》卷之28 <程朝奉單遇無頭婦 王通判雙雪不明冤>에서는 徽州의 갑부 程朝奉이 술집 李方哥의 아내 陳氏의 미색에 반해 백방으로 유혹했으나 넘어오지 않자, 남편 이방가에게 돈을 주고 진씨를 얻기로 하였다. 그날 정조봉이 도착하니 陳氏는 이미 죽어있었는데 머리가 잘려 사라지고 없었다. 이 작품에서는 특히 관부의 검험과 조사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徽州府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자 소장을 내고 三府(通判: 명대에는 각 부에 한 명의 통판을 배치하였는데, 知府나 同知 보다는 낮은 신분이었다) 府의 副長官으로 식량수송·수리·옥송 등을 담당하였음)에게 보고를 한다. 王通判은 직접 정조봉·이방가 두 원고와 피고를 데리고 이방가의 술집으로 가서 검시를 실시하였다. “검시해보니 부인의 사체가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칼로 살해당한 것으로 현장에 머리가 없었다. 왕통판은 먼저 돌아가고, 地方이 시체를 관에 넣고 원고와 피고를 데리고 관청으로 돌아왔다.(相得是個婦人身體, 被人用刀殺死的, 現無頭顱. 通判着落地方把尸盛了, 帶原被告到衙門來.)”⁸⁾ 그러나 철저한 현장 검증과 탐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王通判은 정조봉을 강간미수와 살인으로 판결하였으나, 진씨의 머리가 없어서 사건을 마무리하기가 어려워지자 정조봉에게 시한을 정해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하였다. 정조봉은 시한이 되어도 머리를 내어놓을 수 없었고, 왕통판은 머리를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정조봉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여겨 탐문을 재개하였다. 탐문과정에서 탁발승이 사라졌다는 단서를 얻게 되고 탁발승을 잡아 그의 자백을 받아냈다. 그런데 탁발승이 진씨의 머리를 두었다는 곳으로 갔으나 머리는 없었고, 다시 趙大의 집으로 옮겨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전개과정이 밝혀지자 왕통판은 중간에 거짓이 있을까 의심하여 가마를 불러 직접 조대

8) (明)凌濛初 著, 《二刻拍案驚奇》(人民文學出版社, 1996), 526쪽.

의 집으로 가서 땅을 파게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사이 무슨 거짓이 있을지 모르니 반드시 내가 직접 가서 검증을 해야겠다.(只怕其間有詐僞, 須得我親自去取驗.)”⁹⁾ 이것은 사법관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태도이다. 여기에서 뜻밖에도 남자의 머리를 발견하게 되어, 완전범죄가 될 뻔 한 조대의 살인을 밝혀냈고, 또 진씨의 머리도 찾게 되어 탁발승도 처벌하게 되었다. 이처럼 복잡한 사건들이 얽혀있는 살인사건의 경우, 만약 이 과정에서 왕통관이 직접 사건현장에 가지 않았다면 그 사이 어떤 거짓과 비리가 섞였을 지 모를 일이다.

이와 같이 송자는 《세원집록》을 편찬하여 판관 관리들이 철저한 검험을 통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 백성들에게 억울함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는 관리용 지침서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그는 재판에서 올바른 검험을 통해 백성의 억울함을 씻어주는 관리를 의학지식에 밝아 병을 말끔히 낫게 해주는 의사에 비유하였다. 송자는 “의사가 고대의 치료법을 검토하여 인체의 맥과 경락의 안팎을 먼저 철저히 이해하고 이 맥과 경락에 의거해 침술을 쓰면 치료하지 못할 병이 없는 것과 같다. 이 책이 억울함을 씻어 주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은 의사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과 같은 능력일 것이다.(如醫師討論古法, 脈絡表裏先以洞澈, 一旦按此以施針砭, 發無不中. 則其洗冤澤物, 當與起死回生同一功用矣.)”¹⁰⁾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송자가 올바른 검험은 의사가 의술로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정도로 검험을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관리의 검험을 중시하는 《세원집록》의 저작 의도는 공안소설의 창작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요소이다. 공안소설에서는 특히 사건 해결에 신중을 기해 세심한 검험과 탐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淸官의 형상을 통해 《세원집록》에서와 같은 창작의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공안소설에서 청관은 바로 《세원집록》에서 추구하는 검험능력을 갖춘 전형

9) 같은 책, 530쪽.

10) (南宋)宋慈 著, 앞의 책, 1쪽.

적인 관리의 인물형상이라 할 수 있다.

III. 《洗冤集錄》에 나타난 司法制度와 公案小說의 창작

宋慈는 관리의 判案을 돕기 위해 《洗冤集錄》을 편찬하였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는 “옥사에서의 오관은 시작단계의 실수에서 생겨나는 것이 많고 검험에서의 착오는 모두 검시 경험의 부족 때문이라고 매번 생각하였다.(每念獄情之失, 多起於發端之差; 定驗之誤, 皆原於歷試之淺.)”¹¹⁾라고 저작의도를 밝혔다. 송자는 검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검험이 규범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원집록》을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책은 고대의 형사검험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는 이 책을 통해 검험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바로 《세원집록》이 세상에 나오게 된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세원집록》은 법의학 대작임에 틀림없지만, 검험 지식 및 검험 규칙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법률규정이나 사법해석 등도 기록하고 있다. 《세원집록》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사건의 조사와 심문·사체부검·외과 지식·사인 등이 서술되어 있다. 이 책은 스스로도 밝히고 있듯이 《內恕錄》¹²⁾·《疑獄集》·《折獄龜鑑》·《棠陰比事》 등의 영향을 받아 편찬된 것으로 법률판례서와 법의학을 접목시켜 편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洗冤集錄·序》를 보면 “요즘 전하는 책들 중에서 《내서록》을 비롯해서 몇 권의 책들이 있는데 모두 모아서 중요한 것을 가려내고 고증을 거쳐 바르게 고치고 자신의 의견을 더해 모두 종합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遂博采近世所傳諸書, 自《內恕錄》以下, 凡數家, 會而粹之, 釐而正之, 增以己見, 總爲一篇.)”¹³⁾라고 하였다. 송자는 다른 관리들이 이 책을

11) 같은 책, 1쪽.

12) 이 책은 이미 소실되고 없다.

참고하는 것은 바로 “의사가 고대의 치료방법을 검토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如醫師討論古法.)”라고 하여 《세원집록》이 범의학의 경험 및 법률판례집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까지 모두 더한 책임을 밝히고 있다.

법률상으로 문제가 되는 의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감정하여 그것을 해결하는 학문을 法醫學(Legal Medicine; Forensic Medicine)이라고 한다.¹⁴⁾ 이것은 법관의 사유방식으로 사체부검을 연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원집록》은 판관이 사체부검을 중심으로 사건을 심의하고 판결을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에서의 경험은 모두 재판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의 저자 송자는 ‘옥사에서의 오판(獄情之失)’과 함께 ‘검험에서의 착오(定驗之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잘못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들에게 지침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公案小說은 고대소설의 여러 유형들 중에서 비교적 사실적으로 고대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공안소설은 고대사회에서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과 사건해결의 제도적 장치인 법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생활의 면모를 사실감 있게 표현한 문학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공안소설은 살인사건을 통해 사법현장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사법제도 및 범의학적 요소를 살펴보는 것은 공안소설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살인사건을 다룬 공안소설에서는 주로 지방관의 검험과 판결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宋代에 지방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검험은 지방관리에 의해 행하여졌으며, 검험에서 발생하는 착오는 모두 관리의 몫이었다. 송대의 관리는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官驗制度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였다. 송대의 사법제도에서는 중앙의 사법권력이 직접적으로 지방을 통제하였다. 중앙에는 감찰기관으로 御史臺를 설치하고 御史大夫(약칭 御史)를 장관으

13) (南宋)宋慈 著, 앞의 책, 1쪽.

14) 강대영·강현욱·곽정식 외 9인 공저, 앞의 책, 14쪽.

로 하였으며, 御史臺에 별도로 檢法을 두어 법률 검토와 제정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또 推直官·推勘官을 두고 사건의 심의를 담당하게 하였고, 主簿는 문서의 관리와 곡량 장부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¹⁵⁾ 또한 사법기구로 御史臺와 함께 刑部·審刑院·大理寺를 두었으며, 이중 어사대가 중대한 형사사건의 최종 심의를 담당하게 하였다.¹⁶⁾

각 路에는 “提點刑獄司”(약칭 提刑)가 설치되어 관할구역의 사법업무를 관장하였는데, 달리 憲司라고도 하였다. ‘제점형옥사’는 ‘提點刑獄公事’를 장관으로 하였으며, 각 路에서 監督을 책임지고 옥송을 관장하여 시비를 가리고 죄수를 심문하고 안건을 상부에 보고하고 위법하는 관리들을 감찰하는 역할을 하였다.¹⁷⁾ 또한 이것은 州·縣의 중대한 판결을 담당하는 사법관에 해당하는 자리로 중앙의 사법권에 대해 검토헌도를 책임지고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였다. 明·淸시대에는 ‘提刑按察使’(약칭 ‘按司’)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제형’의 주요업무는 형옥·소송·平反冤案(원심파기) 등을 감독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관원들을 처벌하고 부당하게 관직을 잃은 관원들을 재등용할 수 있게 천거하는 역할 등이었다. 송대에는 특히 제형관의 인선을 중시하였는데, 장기적으로 지방에 머물러야 하고 법률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지방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인물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지방에서는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지방장관이 스스로 판결을 내리고,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만 상부에 申詳하고 비준을 받아서 판결을 내렸다. 《세원집록》의 저자인 송자는 바로 이러한 제형이었고 사법검토헌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인식하여 《세원집록》을 편찬하게 된 것이다.

路級 아래는 州와 縣 혹은 府와 縣의 두 단계로 나뉘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안건은 지방장관인 知州와 知縣 등에 의해 처리되었다. 知縣은 안건을 접수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명백한 심리를 거쳐 徒刑 이상이면 知州

15) 張晉藩 著, 《中國監察法制史稿》(商務印書館, 2007), 239-240쪽.

16) 같은 책, 288쪽.

17) 같은 책, 248-249쪽.

에게 보내 처리하였고, 知州는 州의 사법업무를 관장하였는데, 사형판결 사건 중 중대한 사안이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은 중앙에 보고하였다.¹⁸⁾ 지방의 행정장관이 사법재판을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公案小說은 주로 知縣, 知府, 推府 또는 太守, 大尹 등 지방장관의 사건에 대한 심리과정을 묘사하는 작품들이 많이 있다.

주·현의 관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 위하여 또 通判이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군대를 감찰하고 대신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변경의 군사정보를 수집하여 황제의 군사 지휘에 근거를 마련해주는 일을 담당하였다.¹⁹⁾

《세원집록》에는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관할제도에 따라 검험을 실시해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 검험과정은 담당관리가 파견되어 이루어지는데, 《세원집록》 卷之一(一)에 의하면 “모든 검시는 주에서는 司理參軍을 파견하고 현에서는 尉를 파견한다. 현위가 비어있으면 다음으로 주부·현승·대리관원을 파견하고 모두 비어있으면 현령을 보낸다.(諸驗屍, 州差司理參軍, 縣差尉. 縣尉闕, 卽以次差簿·丞·監·當官皆缺者, 縣令前去.)”²⁰⁾라고 하였다. ‘司理參軍’은 州의 司理院에서 송옥을 관장하여 사건의 심리와 죄수를 관리·감독하는 일을 담당하는 관리이며, ‘尉’는 치안을 담당하여 도적을 잡고 비리를 규찰하는 일을 담당하는 관리이다.²¹⁾ 또한 이들의 검험 태도에 대해 《세원집록·서》에서는 “조금이라도 태만하고 쉽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서는 안 된다.(不敢萌一毫慢易心.)”²²⁾라고 하였다.

《諭世明言》 第38卷 <任孝子烈性爲神>에는 다음과 같은 묘사가 있다. “곧장 현위를 보내어 관리와 作作 등이 임규를 압송하여 시체 옆으로 데려오게 한 후 검험을 분명하게 하였다.(隨卽差個縣尉, 並公吏作作人等, 押

18) 周密 著, 《中國刑法史綱》(北京大學出版社, 1998), 280-282쪽.

19) 張晉藩 著, 앞의 책, 251쪽.

20) (南宋)宋慈 著, 앞의 책, 3쪽.

21) 武樹臣 主編, 《中國傳統法律文化辭典》(北京大學出版社, 1999), 法律設施類 「司理參軍」·「縣尉」條.

22) (南宋)宋慈 著, 앞의 책, 1쪽.

着任珪到屍邊檢驗明白.)”²³⁾ 또 “그날 일제히 함께 양공의 집으로 가서 다섯 구의 시신을 일일이 다 검험한 후 대문을 걸었다. 현위는 범인들의 무리를 데리고 부윤의 공당으로 와서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하였다. ‘다섯 구의 시신을 검험하였고 흉악범이 스스로 살인을 인정하였습니다.’(當日一齊同到梁公家, 將五個屍首一一檢驗訖, 封了大門. 縣尉帶了一幹人犯, 來府堂上回話道: ‘檢得五個屍, 並是凶身自認殺死.’)”²⁴⁾ 여기에서 현위가 친히 사건현장에 나가 검험을 지휘하고 돌아와서는 大尹에게 보고하는 검험과정을 찾아볼 수 있다. 송나라 법률제도에서는 杖刑 이하는 현에서 판결하여 집행하고, 徒刑 이상의 안건은 현이 심의하고 주에서 판결한다. 사형사건은 刑部에 보고하고 또 제형에게 보고하면 제형은 詳復의 책임을 졌다.

송대에 검험에 참여하는 하급관원에는 ‘오작’과 ‘行人’이 있었다. 오작은 고대 관청의 관리로 시체의 부검을 맡거나 대신 염과 장례를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五代 시기 오작과 행인은 사회의 저층 인사였고 문화수준이 낮았으며 초상집 장례를 돕는 일을 하였다. 송대에는 관리들에 의해 오작은 비로소 사건현장에 불려나가 사체를 씻고 상처를 보고하는 검험 관리의 조수가 되었으며, 元代에 이르러 정식으로 산 사람과 시체를 검험하여 감정하는 일을 맡는 관리가 되었다.²⁵⁾ 이들은 관부에서 고용한 사람들이지 公人이나 官人은 아니어서 법률적 지위를 가지지는 못하였다. 《驚世通言》第33卷 <喬彥傑一妾破家>에서는 검시를 하는 하급관리로서의 오작의 일을 기술하였다. 王靑에게 돈을 주고 시신을 건져 확인한 程五娘은 오작 李團頭의 집으로 가서 관을 사고 사람을 시켜 시신을 건져 올려 관에 넣고 강가에 두었다. 여기에서 송·원·명 시대의 오작이 관청의 지시에 따라 검험을 함과 동시에 관을 만들고 염을 해주는 장의사의 역할을 하던 상인이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²⁶⁾ 또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비리를

23) (明)馮夢龍 編, 《喻世明言》(人民文學出版社, 1994), 621쪽.

24) 같은 책, 621쪽.

25) 武樹臣 主編, 앞의 책, 法律設施類「作作」條.

26) (明)馮夢龍 編, 《驚世通言》(人民文學出版社, 1994), 529쪽.

저질렀고 크게 신임을 얻지 못하였다. 《세원집록·서》에 의하면 “검시관의 속임수나 하급관리의 간교함이 더해져 사건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막막하여 해결할 수가 없다.(重以作作之欺僞, 吏胥之姦巧, 虛幻變化, 茫不可詰.)”²⁷⁾라고 하였다. 또 《세원집록》 卷之二(三)에 보면 “모든 검험에서 행인의 말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술과 식초로 깨끗이 씻고 자세히 검시해야 한다.(凡檢驗不可信憑行人, 須令將酒醋洗淨, 仔細檢視.)”²⁸⁾라고 하였다. 송자는 관리들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검험관이나 오작의 부정이 검험제도와 법령을 실시함에 있어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중국 공안소설에서도 살인사건을 다룬 작품에서 오작의 역할을 묘사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한다. 오작의 역할과 그들의 부정과 비리가 상세하게 묘사된 대표적인 작품은 바로 《二刻拍案驚奇》 卷之31 <行孝子到底不簡尸 殉節婦留待雙出柩>이다. 이 작품은 서두에서 검험에 대한 당시의 법령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맞아 죽은 사람은 반드시 검시를 해야 한다.(今法被人毆死者, 必要簡屍.)”²⁹⁾라고 하였다. 특히 이 소설에서는 관부 검시의 병폐와 잔혹성에 대해 매우 사실적으로 폭로하였다.

관부에서 검시를 허가하면 지방에서 천막을 치는 사람은 천막 치는 돈을 요구하고, 관리를 따라 다니는 서기·수위·마부·취고수 모두 술값을 요구하고, 검시인은 시작하는 돈과 손을 씻는 돈을 요구하며, 심지어 관리 앞의 탁자 위에 놓이는 향값·떡값·붓·벼루값까지도 요구하고, 까는 담요와 방석 모두 원고가 준비해야 한다. 또 나쁜 보좌관은 술상을 차리게 하는 등 가지각색으로 요구하여 다 말할 수도 없다. 아무런 상처도 없는 시체를 부검하니, 이미 죽은 지 7·8일이나 지난 사람이고, 원고를 심문하여 거짓 자백을 하게 하니,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官府一准簡屍, 地方上搭廠的就要搭廠錢, 跟官、門皂、轎夫、吹手多要酒飯錢, 作作人要開手錢、

27) (南宋)宋慈 著, 앞의 책, 1쪽.

28) 같은 책, 20쪽.

29) (明)凌濛初 著, 앞의 책, 564쪽.

洗手錢，至于官面前桌上要燒香錢、朱墨錢、筆硯錢，氈條坐褥俱被告人所備，還有不肖佐貳要擺案酒，要折盤盞，各項各色甚多，不可盡述。就簡得雪白無傷，這人家已去了七八了；就問得原告招誣，何益于事?)³⁰⁾

이 내용들은 비교적 사실적으로 관부의 형식적인 검사와 그 부작용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 작품은 이러한 검험제도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王世名이 관부에서 부친의 시체를 부검하려 하자 관아 公堂에서 자살하여 부친의 시신을 온전하게 보전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당시 사람들의 관념에서 검험은 잔혹한 것이었다. “뼈를 긁어내고 시체를 찌내고, 천만 번 오려내어 죽은 사람과 한판 하는 것은 차마 볼 수가 없는 것이다.(然刮骨蒸屍，千零百碎，與死的人計較，也是不忍見的.)”³¹⁾라고 하였다. 따라서 당시 “법률규정에도 ‘원하지 않는 자는 들어준다.’라는 항목과 ‘시신의 친속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검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례가 있었다.(律上所以‘不願者聽’及‘許屍親告逆勉簡’之例，正是聖主曲體人情處.)”³²⁾라고 하였다.

《세원집록》에도 免檢에 관한 기록이 있다. 卷之一(一)에 의하면 “모든 병사에 대해서는 검험을 해야만 했는데, 함께 살고 있는 친족 중 상복 緦麻 이상을 입는 자나 혹은 따로 살고 있으나 五服의 장례를 치르는 자가 죽게 되면 면검을 원하는 경우에는 들어준다.(諸因病死，應驗尸，而同居緦麻以上親，或異居大功以上親，至死所而願免者，聽.)”³³⁾라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라도 “관에서 조사하여 면검을 받아주었다.(官司審察，聽免檢驗.)”³⁴⁾ 여기에서 당시의 법률에 사체의 면검에 대해 매우 엄격한 제한이 있으며, 이를 어긴 자는 법률의 제재를 받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송대 사법 검험제도의 큰 특징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세원집록》은

30) 같은 책, 564쪽.

31) 같은 책, 565쪽.

32) 같은 책, 565쪽.

33) (南宋)宋慈 著, 앞의 책, 4쪽.

34) 같은 책, 4쪽.

동양법의학 사상을 담고 있어서 사체의 겉표면을 검험하여 내부까지 미치도록 한다(屍表檢驗, 由表及裏)는 정신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엄격히 보면 당시의 검험 자체도 봉건예교의 제약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공안소설 작품 중 사체의 겉모습을 통해 사인을 분석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다.

《二刻拍案驚奇》 卷之20 <賈廉訪履行府牒, 商功父陰攝江巡>에는 이러한 방식의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이 있다.

지현은 이미 마음에 정한 것이 있어 중한 쪽을 따라 죄를 묻고자 하였다. 먼저 오작에게 분부하여 중한 것을 보고하게 한다. 오작은 그 뜻을 헤아려 알아차리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하고 주먹과 발로 때려 치명적인 중상을 입혔다고 추가로 더 보고하였다. 소씨는 어릴 적에 단 음식을 좋아해 앞니가 하나 빠졌는데, 딱딱한 것으로 내리쳐 떨어진 상처로 보고하였다. 결국 진정은 폭력에 의한 치사로 그 죄를 물었고, 첩 정씨는 가장을 협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죄를 물어 각각 교수형으로 판결하였다.(知縣是有了成心的, 只要從重坐罪. 先吩咐作作, 報傷要重. 作作揣摩了意旨, 將無作有, 多報的是拳毆脚踢, 致命傷痕. 巢氏幼時喜吃牒物, 面前牙齒落了一個, 也做了硬物打落之傷. 竟把陳定問了鬪毆殺人之律, 妾丁氏威逼其親尊長致死之律, 各問絞罪.)³⁵⁾

또 다른 작품인 《醒世恒言》 第34卷 <一文錢小隙造奇冤>에서도 검험의 장면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대운은 보고서 바로 가마꾼을 불러 오작 등 일꾼들을 데리고 조씨 집으로 검험을 하러 갔다. 조씨 집에서는 이미 검험용 탁자를 마련해 놓고 대운을 맞았다. 대운은 도착해서 앉은 후 오작을 불러 세 구의 시신의 치명상을 사실대로 검험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오작은 먼저 정노아·전씨를 본 후 보고하였다. “이 두 구는 맞아서 머리가 깨졌습니다.” 또 주상의 죽은 아내 몸 전체를 검시한 후 보고하였다. “이 부인은 몸 전체에 상처가 없고

35) (明)凌濛初 著, 앞의 책, 388쪽.

목 아래에만 한 줄의 혈흔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목이 졸려 죽은 것입니다.”(大尹看了, 就叫打轎, 帶領忤作一應衙役, 往趙家檢驗. 趙家已自擺設公案, 迎接大尹. 到了, 坐定, 叫忤作將三個死屍致命傷處, 從實檢驗報來. 忤作先將丁老兒·田氏看過, 稟道: “這兩個俱是打傷腦殼.” 又將朱常的死婦遍身看過, 稟道: “此婦遍身并無傷處, 惟有頸下一條血痕, 看來不是打死, 竟是勒死的.”³⁶⁾

오작이 검시를 끝내고 보고를 마치자, “대윤은 상세하게 물은 후 직접 걸어가서 세 구의 시신을 차례로 검험하고 오작이 보고한 것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는 속으로 기이하다고 생각하였다.(大尹問了詳細, 自走下來把三個屍首逐一親驗忤作人所報不差, 暗稱奇怪.)”³⁷⁾ 이 장면을 통해 관리와 오작이 어떤 방식으로 검험을 진행하는지 대략을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는 오작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喻世明言》 第38卷 <任孝子烈性爲神>에 다음과 같은 장면이 있다. “처형관은 놀라 몸이 굳어 서둘러 오작과 관리 등에게 명하여 임규의 시신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재빨리 말을 타고 임안부로 가서 대윤에게 보고하였다.(監斬官驚得木麻, 慌忙令忤作公吏人等, 看守任珪屍首, 自己忙拍馬到臨安府, 稟知大尹.)”³⁸⁾ 여기에서 오작은 처형을 하는 일을 보좌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喻世明言》 第26卷 <沈小官一鳥害七命>에도 이와 비슷한 오작의 역할이 묘사되어 있다. “하루는 문서가 부중에 도착하였는데, 관리·오작·행인 등을 보내 세 사람을 압송해 형구인목로 위로 데려다 놓고 온 성안 사람들이 3일 동안 보도록 하였고, 법에 따라 능지처참하고 효수하여 대중에게 보였다. 그때 張婆는 老兒가 능지처참된다는 것을 듣고는 저자로 와서 멀리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오작이 형집행장을 보이자 각자 능지처참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끔찍하여 놀라서 혼이 다 빠져 몸을 돌려서 가버렸다.(一

36) (明)馮夢龍 編, 《醒世恒言》, 앞의 책, 755쪽.

37) 같은 책, 755쪽.

38) (明)馮夢龍 編, 《喻世明言》, 앞의 책, 622쪽.

日文書到府, 差官吏作人等, 將三人押赴木驢上, 滿城號令三日, 律例凌遲分屍, 梟首示衆. 其時張婆聽得老兒要劓, 來到市曹上, 指望見一面. 誰想作見了行刑牌, 各人動手碎劓, 其實凶險. 驚得婆兒魂不附體, 折身便走.)”³⁹⁾라고 하였다. 이러한 묘사를 통해 오작이 잡다한 일들을 처리하면서 형의 집행에도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세원집록》을 중심으로 송대 官驗制度의 절차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保甲法에서 保의 책임자인 保正이 관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것을 ‘報官’이라 한다. 또한 보정이 아닌 친속이나 지인이 관부에 알리는 것을 ‘告狀’이라 한다. 보고가 이루어지면 법률규정에 따라 사체를 검시하고 처리할 관원을 파견해야 한다. 《세원집록》 卷之一(一)에 의하면 “검험할 시기는 보고가 이루어진 후 두 시진이 지나도 관리를 부르지 않으면……장형 100대에 처한다.(諸驗時, 報到過兩時不請官者……各杖一百.)”⁴⁰⁾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縣은 살인사건에 대해 사체 부검을 실시한 후 타살인 것이 확인되면, 이웃 현에서 관리를 청해 復驗을 실시하는데, 이것을 ‘請官’이라고 한다. 《세원집록》 卷之一(一)을 보면 “청관을 하는 쪽에서 법을 어기거나 혹은 청관을 받은 쪽에서 법을 어기든지……현에서 다른 곳에서 사건이 생겨서 검시하라는 청관을 받았을 때 관리가 있으나 사람이 없다고 하면……각각 제도를 어긴 죄로 다스린다.(請官違法, 或受請違法而不言……諸縣承他處官司, 請官驗尸, 有官可那而稱闕……各以違制論.)”⁴¹⁾라고 하였다. 검험이 다 끝나면 친족들이 시신을 받아 가게 된다. 《세원집록》 卷之二(七)에 의하면 “부검관의 검험이 끝나고 쟁론이 될만한 것이 없으면 시신을 친족에게 줄 수 있다. 친족이 없는 사람은 그곳 保正에게 책임지고 묻게 하며, 지켜보도록 명하여 화장하거나 버리지 못하게 한다.(復檢官驗訖, 如無爭論, 方可給屍與親屬. 無親屬者, 責付本都埋瘞, 勒令看守, 不得火化及散落.)”⁴²⁾라고 하였다. 다음 단계로 공

39) 같은 책, 430쪽.

40) (南宋)宋慈 著, 앞의 책, 3쪽.

41) (南宋)宋慈 著, 앞의 책, 3쪽.

문을 상부에 보내는 것을 ‘申’이라고 한다. 이것은 검험에 앞서 상부에 검험의 지시문을 청하는 것이다. 검험은 정해진 기관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세원집록》 卷之一(一)에는 “모든 험시는 가장 가까운 현에 첩을 보내야 하고……첩이 오면 받아야 하고 검험이 끝나면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諸驗尸, 應牒最近縣……牒至亦受, 驗畢申所屬.)”⁴³⁾라는 내용이 있다. 송대의 사법검험은 주로 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송자의 《세원집록》은 특히 ‘法筭’을 검험 관리가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내용으로 보고 전문적으로 한 장절을 할애하여 기록하였다. 따라서 송자의 《세원집록》은 풍부하고 광범위한 검험 내용과 함께 관련 법령과 법규 및 그 해석에 있어서도 아주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서, 실용적인 사법검험의 전문서적이라 말할 수 있다.

IV. 《洗冤集錄》의 법의학적 요소와 公案小說의 창작

宋慈는 관리의 判案을 돕기 위해 《洗冤集錄》을 편찬하였으며, 검험에 착오가 나오는 것은 모두 검시 경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洗冤集錄·序》의 도입에서 “옥사는 사형판결보다 중한 것이 없고, 사형판결은 사건심리보다 중한 것이 없으며 사건심리는 검험보다 중한 것이 없다. 생과 사 그리고 죄가 있고 없음의 잣대, 억울함을 당하는 것과 억울함을 씻는 것의 근거가 모두 여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獄事莫重於大辟, 大辟莫重於初情, 初情莫重於檢驗. 蓋死生出入之權輿, 幽枉屈伸之機括, 於是乎決.)”⁴⁴⁾라고 하였다. 檢驗의 과정을 거친 ‘初情’은 사건심리에 해당하고, ‘大辟’은 사건판결에 해당한다. 송자는 관리들이 사건해결에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이유가 대부분 검험 과정에서 철저하지 못했기 때

42) 같은 책, 41쪽.

43) 같은 책, 4쪽.

44) (南宋)宋慈 著, 앞의 책, 1쪽.

문임을 파악하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세원집록》을 편찬하여 관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세원집록》은 관리의 검험 지식의 보완을 위해 편찬되어 실용성과 과학성을 모두 겸비한 책으로, 살인사건의 검험에 있어 관리들의 지침서가 되었고 또 관리의 시험과목이 되기도 하였다.

공안소설 작품에는 《세원집록》을 직접 언급하고 인용하는 부분이 등장한다. 《諸司公案》 「姦情類」 <黃令判鑿死傭工>의 이야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河池縣의 俞厥成은 鮑氏를 아내로 맞았다. 鮑氏는 친정이 가난하여 곡식을 훔쳐 일꾼 連宗을 시켜 친정에 가져다주게 하였다. 일꾼은 이 일을 빌미로 鮑氏를 협박하여 간통을 하였다. 이 일을 알고 俞厥成은 고의로 일꾼에게 술을 취하도록 먹여 예리한 칼로 겨드랑이 아래에 구멍을 내서 뜨거운 물을 부어 죽이고 중풍으로 죽었다고 하였다. 일꾼 연종의 사촌 동생 連字가 이 사건을 고발하자, 黃太尹은 검험의 지침서인 《洗冤錄》의 내용을 예로 들어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대부분 살아있을 때 칼날에 의한 상처를 입으면 피가 나오고 그 상처에는 혈흔이 생기며 상처 주위 사방에 핏덩이가 선명하게 생긴다. 만약 죽은 후에 칼날에 의한 상처가 나면 살이 하얗게 되고 핏덩이가 나오지 않는다. 대부분 죽은 후에는 혈맥이 흐르지 않아 피부색이 하얗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 겨드랑이 아래는 치명부라 할 수 있지만 상처가 난 곳의 살이 하얗게 되었으니 네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사람을 모함하는 것이 분명하다.(凡生前刃傷, 卽有血汁, 其所傷處血蔭, 四畔創口多血花鮮色, 若死後用刃割傷處, 肉色卽乾白, 更無血花. 蓋以死後血脈不行, 是以肉色白也. 今腋下雖是致命處, 而傷痕肉白, 是汝假此賴人明矣.)”⁴⁵⁾라고 하였다. 이에 연우를 무고죄로 판결하였다. 그러나 이 내용은 실제로는 《세원집록》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 작품에서 《세원집록》을 운운한 것은 의미가 있다. 당시 관리가 검험을 통해 판결을 내릴 때 이 책을 지침서로 삼았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45) (明)余象斗 編述, 《諸司公案》(群衆出版社, 1999), 205쪽.

증명해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송자는 《세원집록》에서 검험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검험관의 표본을 제시하였다. “만약 분명하게 검험에 거짓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돌려보내야 하고, 보고가 의심스러워 판결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반복해서 깊이 생각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면 죽은 사람이 불필요하게 검험에 시달려야 함을 걱정해야 한다.(若灼然知其爲欺, 則亟與駁下; 或疑申未決, 必反復深思, 惟恐率然而行, 死者虛被澆漉.)”⁴⁶⁾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송자는 사건의 해결에 실수가 생기는 것은 모두 검험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또한 그가 검험관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검험 처리와 안건 처리의 관계에 있어서, 송대의 관험제도는 관리의 검험이 안건 처리를 결정하는 관계로 규정되어 있다. 송대의 검험 제도는 唐律을 기초로 하여 발전한 것이다. 南宋 寧宗 때 謝深甫 등이 監修한 《慶元條法事類》는 이전까지의 敕·令·格·式·申明 등을 16門의 分門別類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으며, ‘檢驗’을 하나의 장으로 따로 두었다. 여기에서 검험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남송 理宗 淳祐 7년(1247)에 편찬한 《세원집록》에서는 검험의 형식과 절차에 있어 법률이 初驗·復驗·檢覆·巡驗 등의 제도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검험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 법률적인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 바로 《세원집록》이 세상에 나오게 된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세원집록》에는 검험의 형식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비롯하여 검험과 관련된 법의학 지식과 정보가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송나라 검험의 조령·驗屍의 방법 및 주의사항·현장 법의학·생전 상해와 사후 상해의 구별·기계성 질식·기계성 손상·손상된 사체의 검험·교통상해·옥중 사망·화재에 의한 사망과 화상에 의한 사망·중독사망·병사·鍼灸에 의한 사망 등의 사체 현상을 비롯하여 사체 발굴·救死의 방법

46) (南宋)宋慈 著, 앞의 책, 1쪽.

· 산부인과 법의학 · 곤충 법의학에 이르기까지 현대 법의학 내용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세원집록》은 판례와 검험방법을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면적이고 계통적으로 검험의 원리와 경험을 기술하고 있는 체계적인 법의학 저작으로 중국 현대의 법의학도 《세원집록》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학자들도 많다. 이러한 내용 중 특히 사체 발굴과 검험의 방법 및 사체의 다양한 현상에 대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기록은 공안소설의 세부묘사와 표현기법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다.

《세원집록》에서 말하는 검험의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초검이 진행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송자는 《세원집록·서》에서 초검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세원집록》 卷之二(六)에 의하면 “訴狀을 내는 사람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상세히 검험해야 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처리해야 한다. 믿을만한 관리를 보내 조사하도록 하고 혹 비정상적인 죽음 등의 이야기가 있으면 우선은 보고를 믿고 스스로 다시 연구해서 결정해야 한다.(告狀絕不可信, 須是詳細檢驗, 務要從實. 有可任公吏使之察訪, 或有非理等說, 且聽來報, 自更裁度.)”⁴⁷⁾라고 하였다. 또한 “초검에서는 사체가 부패하여 검험할 수 없다고 해서 안 되며 반드시 죽음의 주요 원인을 지적해 내야 한다.(初檢, 不得稱“尸首壞爛, 不任檢驗”, 並須指定要害致死之因.)”⁴⁸⁾라고 하였다. 《경원조법사류·검험》에도 친족이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망이나 비정상적인 사망과 타살로 인한 사망 혹은 범죄자의 사망 등은 관리가 부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초검은 초보적인 검험이나 초보적 결론이 아니라 검험관이 검험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초검 후에는 현장을 보존하고 사체를 보호해야 한다. 초검은 하나의 검험 과정에 불과하며, 형사사건이나 복잡한 사안의 경우 復檢을 해야 한다. 《세원집록》 卷之二(七)에 의하면 부검이 “초검

47) 같은 책, 39쪽.

48) 같은 책, 39쪽.

과 다름이 없으면 결론을 내어 상부에 보고할 수 있으며, 만약 치명상의 위치가 불분명하거나 손상을 입은 상황이 다르면, 예를 들어 약물에 의한 사망 혹은 병에 의한 사망 등이면 소홀히 처리해서는 안 된다.(與前檢無異, 方可保明具申. 萬一致命處不明, 痕損不同, 如以葯死作病死之類, 不可概舉.)⁴⁹⁾라고 하였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復檢이 끝나면 비로소 친족에게 시신을 넘기게 된다. “復檢官이 검험을 다 끝내고 별 다른 쟁론이 없으면 시신을 친족에게 넘겨줄 수 있다.(復檢官驗訖, 如無爭論, 方可給屍與屍親屬.)”라고 하였다. 復檢은 시체의 검험, 현장조사와 현장 감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재검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에 맞추어 법령에 따라 진행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검험관은 復檢에 대해 더욱 책임 있고 명확한 결론을 얻게 된다.

공안소설에도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지방관이 관리를 파견해 검험을 하고 사인을 밝혀내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二刻拍案驚奇》 卷之25 <徐茶酒乘鬧劫新人 鄭蕊珠鳴冤完舊案>은 蘇州府 嘉定縣에서 벌어진 기이한 살인사건을 다루었다. 鄭某라는 사람에게는 鄭蕊珠라는 딸이 있었는데 謝三郎에게 혼인을 시키기로 하고 길일을 정하였다. 혼인을 3일 앞두고 그 고장 풍습대로 사람을 불러 머리를 빗기고 얼굴을 다듬었는데, 그때 茶酒로 왔던 徐達이 정예주의 미모에 흑심을 품게 되었고, 혼인 당일 몰래 들어와 신부를 납치해서 데려갔다. 그러나 사람들이 쫓아오고 정예주가 소리를 지르자 서달은 그녀를 마른 우물에 밀어버리고 도망을 쳤다. 杞知縣은 서달을 압송하고 謝氏와 鄭氏 집안 사람들과 함께 우물로 가서 현장 검증을 하게 한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지현은 문서를 작성하고 담당 하급관원을 보낸다. 관원은 당사자를 압송하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동행한다. 또 검험을 마친 후에는 보고를 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현은 허가서를 써서 공인 한 사람을 보내 서달을 압송해서 사씨·정씨 두 집안 사람들과 함께 빨리 우물로 가서 사실대로 검증하고 보고하도록 하였다.(知縣寫了口

49) 같은 책, 41쪽.

詞, 就差一個公人, 押了徐達, 與同射、鄭兩家人, 快到井邊來勘實回話.)”⁵⁰⁾ 라고 서술하였다. 이렇게 해서 현장검증에 나섰는데, 가족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쪽 謝公은 사람을 불러 대나무 바구니와 줄을 준비해 우물로 내려가 사람을 구하게 하였다. 담이 큰 사람이 줄을 묶고 매달려서 내려갔다. 우물에는 물이 없고 손으로 건드려 보니 과연 한 사람이 그 안에 웅크리고 있었다. 한 번 밀어보니 이미 움직이지 않았다. 안아서 바구니 속에 넣고 끌어올렸다. 사람들이 보니 무슨 신부인가? 수염이 많이 난 남자였고 머리가 맞아서 크게 벌어져 있었다.(這邊謝公叫人停當了竹兜繩索, 一面下井去救人. 一個膽大些的家人, 扎縛好了, 掛將下去. 井中無水, 用手一摸, 果然一個人蹲倒在里面. 推一推看, 已是不動的了. 抱將來放在兜中, 吊將上去. 衆人一看, 那里是甚麼新娘子? 却是一個大胡須的男子, 鮮血模糊, 頭多打開的了.)⁵¹⁾

여기에는 시체를 끌어올려 확인하는 현장검증의 장면이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사건은 더욱 흥미진진해지는데, 정예주가 우물 속에서 소리를 지르자 때마침 지나가던 客商 趙申과 錢巳 두 사람이 그녀를 구해주었다. 그런데 전사는 그녀의 미모를 보고 돌로 趙申의 머리를 쳐서 죽이고 우물 속에 밀어버렸던 것이다. 정예주에 의해 사건의 전말이 모두 드러나서 지난 번 우물에서 발견한 남자 시신이 조신의 것임이 밝혀지자 知縣은 시신을 仵作에게 검시하게 한다. “이에 조신의 시신을 끌어올려 오작에게 두개골이 깨진 것을 검험하게 하였더니, 과연 생전에 돌에 맞아 상해를 입고 죽은 것이었다.(遂吊取趙申尸首, 令仵作人簡驗得頭骨碎裂, 系是生前被石塊打傷身死.)”⁵²⁾ 마지막으로 시신의 처리과정도 살펴볼 수 있다. “조신의 시신은 가족이 가져가 매장하였고, 이웃 지역이라 다 묻고서 풀어주어 집으로 돌아갔다.(趙申尸骨, 家屬領埋; 系隔省, 埋訖, 釋放寧家.)”⁵³⁾

50) (明)凌濛初 著, 앞의 책, 482쪽.

51) 같은 책, 482쪽.

52) 같은 책, 488쪽.

이 작품은 祝允明의 《九朝野記》 卷4에 실려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아주 소략하다. 《구조야기》에서는 시신을 찾는 장면이나 검시하는 장면이 너무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함께 가서 찾아보니 과연 시신이 있었는데, 남자였다.(與往檢覓, 果得屍, 然而男子也.)”⁵⁴⁾ 관부는 이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방을 붙여 시신의 가족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후에 잡혀갔던 여자가 관부에 고발하여 남자 시신의 신상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 등이다. 《九朝野記》에는 이후 오작에 의한 검시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에 반해 공안소설 작품 속에서는 시신의 발굴 장면 등을 비롯하여 초검과 復檢 및 검험 후 시신의 처리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묘사는 《세원집록》 등 법의학서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세원집록》의 기록을 보면 다음으로 檢覆·申檢 등의 내용이 있다. 검복은 復檢의 한 형태로 역시 검험의 한 과정이다. ‘憲司行下’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로 提刑 및 그 아래에서 과견한 관리의 검험으로 다시 검증하는 성격을 띠는 것이다. 《세원집록》 卷之一(一)에 의하면 “모든 검시는……그 관할 아래의 현은 모두 주에 보고해야 한다.(諸驗屍……其郭下縣, 皆申州.)”⁵⁵⁾라는 규정이 기록되어 있다.

《세원집록》에서 구체적인 혐시의 방법과 사체의 현상 등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세원집록》 卷之一(三)에 의하면 비정상적인 타살에 의한 살인에 대해서 검험을 면밀하게 진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절차와 법의학 지식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나머지 살해와 상처로 인한 사망 및 병 등 상식적이지 않게 죽은 사람은 그 주변을 모두 기록하고 나서 시체를 깨끗한 곳으로 옮겨 더운 물·술 혹은 식초 등으로 씻은 후, 먼저 시체를 한번 검사한다. 뒤통수·정수리·두발

53) 같은 책, 488쪽.

54) 譚正璧 編, 《三言兩拍資料》(上海古籍出版社, 1985), 846쪽.

55) (南宋)宋慈 著, 앞의 책, 3쪽.

속 등을 자세하게 보아야 하는데, 뼈 속에 못을 박아놓고 태웠는지 자세히 보아야 한다. 더욱 눈·입·이·혀·코·항문과 음부 두 곳에 이물질이 있는지 주의해야 한다.(其餘殺傷病患, 諸般非理死人, 札四至了, 但令扛鼻明淨處, 且未用湯水酒醋, 先干檢一遍, 仔細看腦後、頂心、頭髮內, 恐有火燒釘子釘入骨內. 更切點檢眼睛、口、齒、舌、鼻、大小便二處, 防有他物.)⁵⁶⁾ 라고 하였다. 또한 《세원집록》 卷之一(三)에 의하면 “무릇 검험은 함부로 행인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술과 식초로 씻은 후 자세하게 검시해야 한다.(凡檢驗不可信憑行人, 須令將酒醋洗淨, 仔細檢視.)⁵⁷⁾”는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비정상적인 죽음의 흔적들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만약 화재로 인한 사망은 입 속에 재가 있고, 익사한 사람은 배가 부풀고 속에 물이 있으며, 옷이나 젖은 종으로 입과 코를 막아 죽은 자는 배 속에 아무것도 없이 부풀어 있고, 타인에 의해 목이 졸려 죽은 자는 목 아래 줄이 겹친 흔적이 생기고 손톱으로 긁은 자국이 있을 수 있고, 만약 자결을 한 것이면 뒤통수가 八字로 나누어지고, 줄이 겹친 자국이 없으며 줄이 목구멍 아래에 있으면 혀가 나오고 줄이 목구멍 위에 있으면 혀가 나오지 않는다.(如燒死, 口內有灰; 溺死, 腹脹, 內有水; 以衣物或濕紙搭口鼻上死, 卽腹干脹; 若被人勒死, 項下繩索交過, 手指甲或抓損; 若自縊, 卽腦後分八字, 索子不交; 繩在喉下, 舌出; 喉上, 舌不出.)⁵⁸⁾”

중국 공안소설 작품 중에서 살인사건을 다룬 작품들이 주로 법의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살인사건을 다룬 공안소설에서는 검험의 현장을 묘사한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서 법의학 저서로 가장 영향력 있는 《세원집록》의 공안소설에 대한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세원집록》 卷之四(二五)를 보면 “대부분 시체와 머리가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 가족에게 먼저 사체와 머리가 한 사람의 것인지 확인하도록 해야한다.(凡驗尸首異處, 勒家屬先辨人尸首.)⁵⁹⁾”라는 기록이 있다. 앞서

56) 같은 책, 16쪽.

57) 같은 책, 20쪽.

58) 같은 책, 20쪽.

분석한 작품 중 《二刻拍案驚奇》 卷之28 <程朝奉單遇無頭婦 王通判雙雪不明冤> · 《二刻拍案驚奇》 卷之25 <徐茶酒乘鬧劫新人 鄭蕊珠鳴冤完舊案> 등이 이러한 검험 내용을 다루는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또 《洗冤集錄》 卷之四(二六)에서는 “대체로 생전에 불길에 타 죽은 자는 그 사체의 입과 코 안에 재가 남고 양손과 양발이 모두 오그라든다. 만약 죽은 후에 불에 타면 그 사람은 비록 손발이 오그라들었다하더라도 입 안에는 재가 없다.(凡生前被火燒死者, 其尸口鼻內有煙灰, 兩手腳皆拳縮; 若死後燒者, 其人雖手足拳縮, 口內即無煙灰.)”⁶⁰⁾라고 하여 화재로 인한 사망과 사망 후 화재로 가장한 것을 구별하여 주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공안소설 《諸司公案》 「人命類」 <朱知府察非火死>의 이야기를 보면 彭州府 九龍縣의 寇遠은 申謙이 자신의 산 옆에 무덤을 만들고 길을 내고는 돈도 주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신검의 식구 7명을 모두 죽이고 불을 질렀다. 知府 朱壽隆은 철저한 현장 감식으로 범인을 검거하는 데 성공한다. 그는 화재 사건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고는 집안에 화재가 나면 한 두 사람은 도망칠 수도 있을 텐데 모두 죽은 것에 의심을 품고 곧장 현장으로 달려가서 현장 감식을 하게 되고 기와가 비뚤비뚤해지고 장작더미가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부하를 시켜 물을 뿌려 재를 걷어내고 보니 해골들이 겹쳐져 있어서 식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令人將水澆冷, 揭開灰, 見骨骸堆疊, 莫可識別.”)⁶¹⁾ 이웃사람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신씨 집에 불이 나서 타 죽은 것이라 말을 하였다. 주지부는 친족에게 해골을 수습해 가도록 명하고, 자신은 가마를 불러 각 집의 동정을 살폈다. 그는 寇遠의 문 앞에 사다리가 놓인 것을 보고 마침내 이것이 원한 관계로 인한 범행임을 밝혀내었다. 또 다른 작품 《諸司公案》 「人命類」 <張縣令辨燒故夫>에서는 凌拔이 霍氏를 아내로 맞았는데, 꺾씨는 외모는 아름다웠지만 음탕하고 교활한 사람이어서 남편을 무시하고 바람을 피

59) 같은 책, 114쪽.

60) 같은 책, 115쪽.

61) (明)余象斗 編述, 《諸司公案》(群衆出版社, 1999), 172쪽.

웠으며 재가시켜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이것을 받아들여주지 않자 남편을 죽이고 불을 질러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현령이던 張舉는 불이 난 당시 꼭씨 혼자만 뛰어나왔다는 시동생의 증언을 듣고는 검시를 통해 능발의 입 속에 재가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죽은 후 불에 탄 것으로 보고 꼭씨의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작품에서는 장현령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두 마리 돼지를 가져와 실험을 하게 한다. 한 마리는 산 채로 방에 넣어 불에 태우고 다른 한 마리는 죽여서 방에 넣고 불을 질렀다. 산 돼지의 입 안에서는 재가 나왔고, 죽은 돼지의 입 안에는 재가 없었다.

《세원집록》 卷之三(二一)에는 익사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사체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다. 공안소설 작품 중에는 익사 사건 혹은 익사를 가장한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한다. 《百家公案》 第60回 <究巨擺井得死尸>에서는 浙西 지방의 부호 葛洪이 큰 거북이를 한 마리 사서 방생을 시켜 주었는데, 후에 閻興과 함께 西京에 거래 차 갔다가 도중에 도흥에 의해 오래된 우물에 빠져 죽었는데, 큰 거북이 包公을 우물로 인도해 閻興의 시신을 발견하게 되고 사건이 모두 해결된다. 이 과정에서 도흥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근처에서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신을 하나 구해 閻興의 비단주머니를 허리에 채워 익사해서 죽은 것으로 가장시켰다. 閻興 집의 하인이 가서 확인하니 얼굴은 썩어 구별하기 어려웠고 허리에 차고 있던 비단주머니를 閻興의 부인에게 갖다 주었다. 부인은 자신이 손수 만든 비단주머니를 보고 閻興의 시신으로 오인하여 장례를 치렀다. 도흥은 물에 빠진 시신은 얼굴이 망가져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옷차림 등으로 시신을 확인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1년이 지난 후 포공의 公牌가 큰 거북을 따라갔다가 우물 속에서 시신을 한 구 발견하여 보고하자 포공이 시신을 검시하게 하는 장면이 나온다. “즉시 이장을 불러서 사람을 시켜 우물로 내려가 꺼내도록 하였는데, 시신 한 구를 발견하였다. 포증은 급히 줄을 달아 올려서 검험하게 하였다. 얼굴색이 변하지 않아 이장에게 이 시체가 어디 사람인지 탐문하여 알

아보게 하였으나 모두들 알아보지 못하였다. 포증은 억울한 죽임이라는 의심이 들어 몸을 수색하게 하니 새로 발급한 통행증 종이 한 장이 나왔고 거기에 고장과 성명이 명백히 적혀있었다.(即喚里老令工人下井采取, 見一死尸, 拯急命系吊上來驗之, 顏色不變. 及勘問里老曾認得此尸是哪里人, 皆不能識. 拯疑枉死, 令搜身上, 有一紙新給路引, 上寫鄉貫姓名明白.)⁶²⁾ 관리는 이렇게 탐문과 검험과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또 다른 작품 《驚世通言》 第33卷 <喬彥傑一妾破家>는 매우 복잡하면서도 흥미로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喬彥傑은 호색한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첩 周氏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 다시 東京으로 떠나 2년이나 妓房에 머물렀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바로 사건을 일으키는 禍根이 되었다. 첩 周氏는 董小二와 간통을 하였고, 또 동소이는 교언걸의 딸인 玉秀를 강간하였다. 이에 분노한 교언걸의 아내인 高氏가 주씨와 함께 동소이를 살해하고 洪三에게 그의 시체를 강에 버리도록 시켰다. 동소이의 시체가 新河橋 근처에서 물 위로 떠오르게 되자, 가죽장이 陳文의 아내 程五娘이 이 시체를 자신의 남편으로 오인하고 관을 마련했다. 그녀가 王靑에게 돈을 주고 시신을 강에서 건져 확인을 한다. 王靑은 이것이 동소이의 시신임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고, 이것을 빌미로 高氏를 협박하였다. 고씨가 왕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왕청은 진상을 모두 官府에 고함으로써 사건의 전말이 모두 밝혀졌다. 寧海郡 安撫司에서 이 사건을 처리하였는데, 안무는 각각에 대해 소장을 쓰고, 다음날 縣尉를 파견해 검시를 하게 하였다. 작품은 이 과정을 통해 검시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일임을 묘사하였다. “한 사람을 파견해 作作과 함께 高氏 등을 데리고 신하교 아래에 가서 검시를 실행하게 하였다. 이날 떠들썩하여 성 안팎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알고는 남정네와 아낙들이 서로 어깨를 부딪고 등을 부비며 몰려들었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으며 모두 나와 구경하였다. (安撫俱將各人供狀立案, 次日差縣尉一人, 帶領作作行人, 押了高氏等去新河

62) (明)安遇時 編集, 《百家公案》(群衆出版社, 1999), 210쪽.

橋下檢屍. 當日鬧動城里城外人都得知. 男子婦人, 挨肩擦背, 不計其數, 一齊來看.)”⁶³⁾ 또한 검시를 하는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각설하고 현 위는 일행을 데리고 신교 아래로 가서 관을 열고 시체를 꺼내 분명하게 검시를 하였다. 시신을 다시 관에 넣고 일행을 데리고 돌아와 보고하였는데, 董小二의 시신은 비록 도끼에 정수리가 깨졌지만 마승이 목을 졸라맨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것이었다.(却說縣尉押着一行人到新橋下, 打開官木, 取出屍首, 檢看明白. 將屍放在官內, 縣尉帶了一幹人回話. 董小二屍雖是斧頭打碎頂門, 麻索絞痕見在.)”⁶⁴⁾

이 외에도 《세원집록》에서는 검험관이 주의할 사항도 일러준다. “무릇 검험관은 안을 잘 지켜서 바깥에 출입하는 것을 금하고, 검험할 일이 생기면 만약 크게 의심이 가는 것이라면 반드시 더욱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알아오게 하고 그 조사한 내용들을 모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착오가 없을 것이다.(凡官守戒訪外事. 有檢驗一事, 若有大段疑難, 須更廣布耳目以合之, 庶幾無誤.)”⁶⁵⁾라고 하여 검험관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검험을 진행하고 사건을 심의해야함을 기록하였다. 공안소설 작품 중 《驚世通言》 第20卷 <計押番金鰻產禍>에서는 관부의 현장검증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동네 사람들의 증언만을 믿어 오관을 해서 억울한 사람을 처벌한 경우가 묘사되어 있다. 周三이 計押番 부부를 살해하고 도주하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두 戚靑이 자주 와서 계압번 부부를 괴롭힌 일을 증언하며 그를 지목하자, 관부의 府主는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죄정을 참수해 버린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송자는 검험관의 주의사항을 상세히 기록했던 것이다. 공안소설의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 《廉明公案》 「人命類」<劉縣尹判誤妻強奸>에서 支弘度라는 사람이 의심이 많아 항상 절개가 곧은 아내 經氏를 시험하였는데, 어느 날 친구 세 사람을 시켜 아내를 시험하게 한다. 그중 경박한 친구 莫響가 도를 넘어 경씨의 하의까지 벗기자 경씨는

63) (明)馮夢龍 編, 《驚世通言》, 앞의 책, 531쪽.

64) 같은 책, 531쪽.

65) (南宋)宋慈 著, 앞의 책, 20쪽.

막예를 칼로 찔러 죽이고 자신도 자결한다. 지홍도는 자신의 장난 때문에 일어난 사건임이 밝혀질까 두려워 두 친구와 모의하고 막예가 경씨를 겁탈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관아에 고하였다. 劉縣尹은 이 사건의 진말을 듣고 우선 증인들을 심문한다. 두 증인은 막예가 경씨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경씨에게 욕을 먹고 칼에 맞고 죽었다고 하였다. 이 작품에는 증인 심문을 마치고 유현윤이 직접 현장 감식에 나서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이때 유현윤이 가서 검험을 하였는데, 경씨는 자결하여 방문 안에 죽어있고 하체에 옷을 입고 있지 않았으며, 막예는 침대 앞에 죽어 있었는데 옷을 모두 갖춰 입고 있었다.(及劉尹去相驗, 見經氏勿死房門內, 下體無衣; 莫譽殺死床前, 衣服却全.)”⁶⁶⁾ 유현윤은 현장 검증을 통해 막예가 들어가자마자 살해를 당한 것이 아닌 것을 짐작하고, 증인들의 말에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들이 공범으로 함께 행동한 것임을 눈치채고는 그들을 심문하여 진실을 밝혀내었다. 여기에서 지방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검험을 하는 제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현장 감식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海剛峰公案》 第55回公案 <判誤妻強姦>에서는 이 부분이 더 소설적으로 개작되었다. 증인 심문을 마치고 海公은 남편 宋尙德과 거짓 증언을 한 친구 秦化를 모두 풀어준다. 일 년이 지난 후 어느 날 海公이 이곳을 다시 지나다가 숙소에 묵었는데 余氏가 꿈에 나타나 그에게 모든 진실을 밝히자, 海公은 그녀의 남편과 친구의 죄를 묻게 된다. 이 작품에서는 같은 소재를 더욱 극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였지만, 해공의 사건해결 능력도 더 떨어지고 현실제도를 더 잘 반영하지 못해 현실성도 떨어져서 공안소설로서의 작품성은 오히려 더 약화된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작품을 통해 《세원집록》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검험의 중요성과 검험관 경험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66) (明)余象斗 集, 《廉明公案》(群衆出版社, 1999), 28쪽.

V. 結 論

《洗冤集錄》은 사체부검에 관한 전반적인 법의학 지식과 이와 관련된 官驗制度에 관해 기술한 계통성 있는 법의학 저작이다. 또한 《세원집록》은 현존하는 책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간행된 법의학서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후 중국의 법의학 관련 저작을 비롯하여 법률문학 특히 공안소설에 많은 영향을 끼친 법의학서이다.

公案小說은 중국 고대의 문학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법률문학이라 할 수 있다. 공안소설의 연구 분야에서 법률판례서 혹은 법의학서 등의 法律類書와 공안소설의 창작 특징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공안소설의 유형적 성격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법률판례서와 공안소설의 영향관계를 다룬 논문들은 종종 보이지만, 아직 법의학서와 공안소설에 관해 구체적으로 저술한 논문은 아주 드물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대 중국에서 영향력이 아주 큰 법의학서 《세원집록》이 공안소설의 창작에 끼친 영향에 관해 초보적인 연구를 진행해 보았다.

《세원집록》의 저자 宋慈는 廣東·廣西·江西·湖南 등지에서 提點刑獄을 지낸 인물로, 그는 형옥에 있어 특히 檢驗을 중시하였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경력을 토대로 하고, 또 여기에 《疑獄集》 등 여러 법률유서들을 참고하여 淳祐 7년(1247) 법의학 대작 《세원집록》을 완성하였다. 이것은 이후 법의학서의 간행뿐만 아니라 공안소설의 창작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세원집록》의 저작배경과 저작의도에 나타난 송자의 사상과 공안소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송자는 형옥에 있어 검험을 중시하여 검험관에게 법의학과 관협제도에 관한 지침서를 제공하기 위해 이 책을 간행하였고, 이러한 저작의도는 공안소설의 창작에서는 검험관의 세심하고 신중한 검험 과정에 관한 묘사를 통해 특히 淸官의 형상을 통해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세원집록》에 나타난 관협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법제도의 여러 모습들이 공안소설의

전개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세원집록》이 전문적으로 기술한 검험절차와 법의학 지식이 공안소설의 소재의 발굴과 표현기법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률제도적 측면 외에도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못하였지만 《세원집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법률사상적 측면도 공안소설의 창작과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세원집록》에는 ‘恤刑慎獄’·‘決獄謹慎’·‘禮法并用’·‘重證據’·‘直理刑正’·‘用法寬仁’ 등의 법률사상이 담겨있으며, 이러한 법률사상이 공안소설의 창작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는 것도 공안소설의 연구에 있어 의의가 있을 것이다.

중국 고대 법의학서에 대한 연구는 중국의 공안소설의 창작에 있어 다른 소설유형과 구별되어지는 특징을 설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는 법률문학 전반에 관한 연구로 그 연구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또한 연구 영역을 문화의 영역과 접목하여 법문화의 연구로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속수사고전서편찬위원회편, 《續修四庫全書》 97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 (南宋)宋慈 著, 《洗冤集錄今釋》(北京: 軍事醫學科學出版社), 2008.1.
- (南宋)宋慈 著, 《洗冤集錄譯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12.
- (明)馮夢龍 編, 《喻世明言》(9쇄;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4.10.
- (明)馮夢龍 編, 《驚世通言》(9쇄;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4.10.
- (明)馮夢龍 編, 《醒世恒言》(9쇄;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4.10.
- (明)凌濛初 著, 《二刻拍案驚奇》(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6.6.
- (明)安遇時 編集, 《百家公案》(北京: 群衆出版社), 1999.7.
- (明)余象斗 編述, 《諸司公案》(北京: 群衆出版社), 1999.7.

- (明)余象斗 集, 《廉明公案》(北京: 群衆出版社), 1999.7.
 譚正璧 編, 《三言兩拍資料》(3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7.
 張國風 著, 《公案小說慢話》(2冊; 上海: 江蘇古籍出版社), 1992.1.
 周密 著, 《中國刑法史綱》(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10.
 洪丕謨 著, 《中國古代法律名著提要》(杭州: 浙江人民出版社), 1999.10.
 武樹臣 主編, 《中國傳統法律文化辭典》(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10.
 張晉藩 著, 《中國監察法制史稿》(北京: 商務印書館), 2007.8.
 강대영 · 강현욱 · 곽정식 외 9인 공저, 《법의학》(서울: 정문각), 2007.9.

<中文摘要>

中國古代法律文學當中公案小說可以說是最突出地體現了法文化的內容。公案小說在內容與形式兩方面上具備着法律文學的各種因素。這樣的特徵與公案小說的形成以及發展過程有密切的關係。它在發展過程中確實受到了法律類書的影響。比如《疑獄集》、《折獄龜鑑》、《棠陰比事》等法家案例書與《洗冤集錄》、《平冤錄》、《無冤錄》等法醫學書。

《洗冤集錄》是南宋理宗淳祐七年(1247)在湖南憲治縣刊行了。它是現存世界最古的法醫學著作, 也是驗屍的指南。《洗冤集錄》的作者是宋慈(1186~1249)。他任過廣東、廣西、江西、湖南等地的提點刑獄官。他以自己的經歷為基礎, 並參照《疑獄集》等法家案例書的傳統, 寫出了這樣一部偉大的著作。這本書的內容有宋代關於檢驗的條令、驗屍方法及注意事項、現場法醫學、各種屍體現象等現代法醫學的大部分的內容。《洗冤集錄》的這些內容對公案小說的創作有深刻的影響。

這篇論文主要探討了《洗冤集錄》對公案小說的創作具有什麼樣的作用: 首先, 討論了《洗冤集錄》的成書背景及創作意圖。宋慈認識到刑事案件中檢驗的異常重要性, 為官吏提供法醫學知識而編撰了這本書。《洗冤集錄》的創作意圖體現在公案小說對審問、驗屍過程的細致描寫中, 而且又體現在

公案小說所塑造的清官形像里。其次，討論了《洗冤集錄》所反映的司法制度特別是官驗制度對公案小說創作引起了極大的影響。再次，討論了《洗冤集錄》的檢驗過程及法醫學知識對公案小說創作引起了鮮明的影響。

주제어 : 公案小說, 法律文學, 《洗冤集錄》, 司法制度, 法醫學